

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

주식회사 카이투자자문

제1조 (목적)

본 기준 및 절차는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에 의거 주식회사 카이투자자문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과 절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동법 시행세칙 등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

본 기준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투자일임자산/자문자산에 적용되는 각종 수수료로서 아래 각호와 같이 구성된다.

1. “기본수수료”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문계약자산 또는 투자일임계약 자산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계약자산의 운용성과와 관계 없이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.
2. “성과수수료”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종료일에 계약자산을 평가하여 계약체결시점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한다.

제4조 (수수료의 부과기준)

1. 회사는 수수료 부과에 있어서 각 투자일임계약/자문계약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책정하되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2. 회사가 투자자와 투자자문/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<별표1> 의 투자일임수수료 산정기준 에 따른다.

제5조 (수수료의 부과절차)

수수료 수준은 투자자문/투자일임계약의 특성, 규모,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계약 기준으로 경영진이 결정한다.

제6조 (설명의무)

회사는 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7조(수수료의 고지)

회사는 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보고서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조 (공시)

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 (기준의 제정 및 개정)

이 기준은 경영진의 결정으로 제정 및 개정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기준은 2014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행일) 본 기준은 2016년 8월 4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 전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.

투자일임수수료 산정기준

투자일임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구분하며,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

1. 공통사항

- 수수료 계산시 10,000원 미만인 경우는 절사함
- 수수료는 계약체결일, 해지일, 종료일 등 사유발생일로부터 5영업일이내에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을의 계좌로 이체
- 투자권유의 업무위수탁계약에 따라 투자일임수수료의 일부를 투자권유를 수행한 수탁사에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.

2. 기본수수료 계산방법

<기본수수료>

- 계산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종료일 (1년)
- 기본수수료 : 투자일임재산 X 기본수수료율

<증액 또는 감액시>

- 기본수수료 : 증액(감액)분 X 기본수수료율 X (잔존계약일수 / 365)

<계약기간중 중도해지시>

- 환급수수료 : 기본수수료 - 투자일임재산 X 기본수수료율 X (운용일수 / 365)

3. 성과수수료 계산방법

<성과수수료>

- 계산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종료일 (1년)
- 성과수수료 : 초과수익 X 성과수수료율
- 초과수익 : 투자수익 - (투자일임재산 X 목표수익율) X (운용일수 / 365)

<증액 또는 감액시>

- 초과수익 : 투자수익 - (투자일임재산 X 목표수익율) X (운용일수 / 365) + (증액(감액)분 X 목표수익율) X (운용일수 / 365)